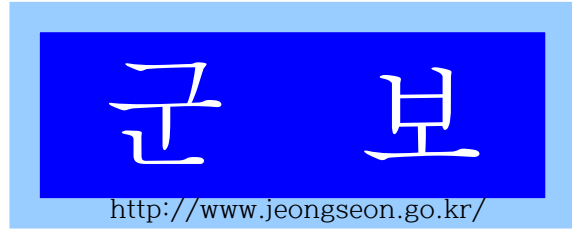
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579호 2021. 10. 20. (수)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21-1214호 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도로:중로2-8호선) 실시계획 인
가 공람·공고.....1
- 정선군 공고 제2021-1237호 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소로2-19호선) 실시계획인가 공
람·공고.....5
- 정선군 공고 제2021-1242호 「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
법예고.....8
- 정선군 공고 제2021-1257호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
고.....14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관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21-1214호

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도로:중로2-8호선) 실시계획 인가 공람·공고

- 1. 정선군 고시 제2019-36호(2019. 2. 28)로 최초 결정된 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도로:중로 2-8호선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·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- 2.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 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0월 8일

정 선 군 수

가. 위 치 :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61-1 ~ 애산리 552-2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도로:중로2-8) 사업
- 2) 명 칭 : 정선(정선) 군계획시설(도로:중로2-8) 개설공사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결정		실시계획인가	비고
	세부시설명	연장·폭원	금회시행	
도로	중로2-8호선	L=664m, B=14~33m	L=664m, B=14~33m	

라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- 1) 성 명 : 정선군수(건설과)
- 2)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
마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5. 12. 31

바. 공람기간 : 게재일로부터 14일(2021. 10. 08.~2021. 10. 22)

사. 공람장소 : 정선군 건설과(☎033-560-2485), 도시과(☎033-560-2132)
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: 붙임

자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붙임

● 토지조서

순 번	위 치	지번	지목	면 적 (㎡)		소 유 자		이해관계인		
				공부	편입	주 소	성명	관계 인	성명	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
1	정선읍 봉양리	361-1	제	16,943	225	-	기획재정부	-	-	-
2	정선읍 봉양리	113-1	전	174	174	-	기획재정부	-	-	-
3	정선읍 봉양리	114-4	전	645	645	-	기획재정부	-	-	-
4	정선읍 봉양리	112-1	천	198	198	-	국토교통부	-	-	-
5	정선읍 봉양리	109-2	전	1	1	-	기획재정부	-	-	-
6	정선읍 봉양리	114-2	제	1,031	158	-	국토교통부	-	-	-
7	정선읍 봉양리	106-1	전	134	134	-	기획재정부	-	-	-
8	정선읍 봉양리	107-3	전	567	567	정선읍 봉양리 193	고*영	-	-	-
9	정선읍 봉양리	107-5	전	510	510	정선읍 봉양리 193	고*영	-	-	-
10	정선읍 봉양리	108-2	묘	232	232	-	기획재정부	-	-	-
11	정선읍 봉양리	101-7	전	1,038	1,038	-	기획재정부	-	-	-
12	정선읍 봉양리	919	천	693,261	3,169	-	국토교통부	-	-	-
13	정선읍 애산리	552-2	천	536	299	-	국토교통부	-	-	-
14	정선읍 애산리	552-1	천	248	30	-	국토교통부	-	-	-
15	정선읍 애산리	556-3	임	162	87	-	산림청	-	-	-
16	정선읍 애산리	550-5	천	152	127	-	국토교통부	-	-	-
17	정선읍 애산리	550-4	제	263	121	-	국토교통부	-	-	-
18	정선읍 애산리	550-12	대	190	190	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	주택도시보 증공사	-	-	-
19	정선읍 애산리	549-7	임	102	102	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	주택도시보 증공사	-	-	-
20	정선읍 애산리	549-9	전	112	112	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	주택도시보 증공사	-	-	-
21	정선읍 애산리	528-4	전	16	16	정선읍 신월리 313	윤*호	-	-	-
22	정선읍 애산리	530-7	전	164	164	정선읍 용탄리 144	유*규	-	-	-
23	정선읍 애산리	531-4	전	122	122	정선읍 녹도길 38-1	정*욱	-	-	-
24	정선읍 애산리	533-9	전	34	34	정선읍 애산리 519-2	홍*순	-	-	-
25	정선읍 애산리	533-10	전	1	1	정선읍 애산리 519-2	홍*순	-	-	-

순번	위치	지번	지목	면적 (㎡)		소유자		이해관계인		
				공부	편입	주소	성명	관계인	성명	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
26	정선읍 애산리	533-8	잡	321	321	정선읍 애산로 59	홍*순	정선신용협동조합	-	근저당권, 지상권
27	정선읍 애산리	534-1	창	291	291	정선읍 애산로 59	홍*순	정선신용협동조합	-	근저당권
28	정선읍 애산리	535-8	대	445	445	정선읍 애산로 59	홍*순	정선신용협동조합	-	근저당권
29	정선읍 애산리	535-9	전	30	30	정선읍 애산로 59	홍*순	정선신용협동조합	-	근저당권, 지상권
30	정선읍 애산리	520-6	임	30	30	서울 은평구 갈현동 12-508	박*자	-	-	-
31	정선읍 애산리	592-1	천	149,819	1,163	-	국토교통부	-	-	-
32	정선읍 애산리	553	천	873	46	-	국토교통부	-	-	-
33	정선읍 애산리	556-1	천	2,198	93	-	국토교통부	-	-	-
34	정선읍 애산리	556-4	전	162	25	-	기획재정부	-	-	-
35	정선읍 애산리	550-3	전	76	50	-	기획재정부	-	-	-
36	정선읍 애산리	557-5	제	132	1	-	국토교통부	-	-	-
37	정선읍 애산리	557-7	제	12	12	-	국토교통부	-	-	-
38	정선읍 애산리	549-10	임	6	6	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693	주식회사 선	-	-	-
39	정선읍 애산리	549-11	전	1	1	횡성읍 한우로 693	주식회사 선	-	-	-
40	정선읍 애산리	548-3	전	365	365	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9-6 616-1607	유*천	-	-	-
41	정선읍 애산리	529-2	전	204	204	정선읍 신월리 313	윤*호	-	-	-
42	정선읍 애산리	560-8	공	222	222	-	정선군	-	-	-
43	정선읍 애산리	560-9	공	8	8	-	정선군	-	-	-
44	정선읍 애산리	532-2	전	781	781	강릉시 포남동 898-17 103-402	유인수외2	-	-	-
45	정선읍 애산리	539-2	임	308	65	정선읍 애산로 55	함*남	정선신용협동조합	-	근저당권
46	정선읍 애산리	538-1	대	362	111	강릉시 입암동 506-9 1405	조*형	주식회사 국민은행	-	근저당권
계				873,482	12,699					

정선군 공고 제2021-1237호

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소로2-19호선) 실시계획인가 공람·공고

- 1. 강원도 고시 제67호(1986. 6. 07.)로 최초 결정된 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소로2-19호선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·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- 2.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0월 15일

정 선 군 수

가. 위 치 :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704-18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소로2-19호선) 공사
- 2) 명 칭 : 정선(북평) 군계획시설(소로2-19호선) 개설공사(어린이놀이터 옆)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군계획결정		실시계획인가	비 고
	세부시설명	연장·폭원	금회 변경 시행	
도로	소로 2-19호선	L=115m, B=8.0m	L=115m, B=8.0m	

라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- 1) 성 명 : 정선군수(도시과)
- 2) 주 소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
마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2. 12. 31

바. 공람기간 : 게재일로부터 14일(2021. 10. 15 ~2021. 10. 29)

사. 공람장소 : 정선군 도시과 (☎033-560-2468)
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
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붙임

자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붙임

◎ 토지조서

순 번	위 치	지 번	지 목	면 적 (㎡)		소 유 자		이해관계인		
				공부	편입	주 소	성명	관계인	성명	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
1		704-19	임	95.1	95.1		기획 재정부	-	-	-
2		704-14	임	340.6	340.6		정선군	-	-	-
3		704-18	전	193.1	193.1		정선군	-	-	-
4		704-16	전	184.8	184.8		정선군	-	-	-
5		704-21	전	149.4	149.4		정선군	-	-	-
계				963	963					

정선군 공고 제2021-1242호

「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0월 13일

정 선 군 수

1. 개정사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1.1.12. / 시행 22.1.13.)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및 청구인 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(제1조)
-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연령 및 청구인 수 변경(제2조)

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: 2021.10.13. ~ 2021.11.02.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(기획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의견

< 의견 제출 및 문의처 >

- 주소 : (26131)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, 정선군청 기획관실

- 전화 : 033-560-2218
- 팩스 : 033-560-2592
- Email : lem0210@korea.kr

- 붙임 1. 의견서 제출서식 1부.
2. 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3. 관계법령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고
	찬 성	반 대		

정선군 조례 제 호

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” 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” 로, “200명” 을 “18세 이상 주민의 150명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감사청구의 주민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.</p>	<p>제2조(감사청구의 주민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----- ----- ----- 18세 이상 주민의 150명 ----- -----.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(2021. 1. 12. 공포, 2022. 1. 13. 시행)

제21조(주민의 감사 청구)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18세 이상의 주민”이라 한다)은 시·도는 300명,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,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면 시·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(2021. 9월 중 공포 예정)

제27조(감사청구심의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의 소속으로 감사청구심의회(이하 이 조에서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~ ⑦ 생략

⑧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, 시·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정선군 공고 제2021-1257호

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

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0월 18일

정 선 군 수

1. 공람목적 :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
2. 공람기간 : 2021. 10. 18. ~ 2021. 11. 02(14일 이상)
3. 공람장소 : 정선군청 도시과 및 정선읍 행정복지센터
4. 주요내용
 - 목 적 :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33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.
 - 위 치 :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33번지 일원
 - 사 업 목적 : 공동주택(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) 신축
 - 규 모 : 사업면적 : 13,804㎡ (세대수 : 186세대)
 - 사업시행자 : 주식회사 도원주택산업
 - 사업착수일 : 사업계획 승인일
 - 준공예정일 : 2023. 12.
5.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조서 : 게재생략(공람장소 비치)
6.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도면 : 게재생략(공람장소 비치)
7. 의견제출장소 및 방법 : 공람기간 내 정선군청 도시과 및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서면제출
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(033-560-2132)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본 공람·공고(안)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,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